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도 법제화 방안연구 A Study on Legalization of Seperate Contracting System for Fire Facility Constructions

이수경[†] · 이성규

Su-Kyung Lee[†] · Sung-Kyu Lee

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과
(2009. 6. 23. 접수/2009. 10. 9. 채택)

요 약

본 연구는 소방시설공사에서의 분리발주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소방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국민 생활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현재 국내의 공공공사에서 실행되고 있는 분리발주제도 현황과 외국의 공공공사 분리발주제도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소방시설공사에서의 분리발주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괄발주제도와 분리발주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소방시설공사사업의 분리발주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대한 법제화 추진 전략과 소방시설공사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ultimate objective of research thesis is to introduce the 'Separate Contracting' system of fire facility construction, develop fire industries and stabilize citizen lives. And, this thesis is designed to analyze the ongoing situations of the 'Separate Contracting' system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public constructions, and initiate the methods of introducing the 'Separate Contracting system' in fire facility constructions proper for Korean situations. In this regard, the research thesis studied of the property of the introduction of the 'Separate Contracting' system of fire facility constructions,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on the existing 'Contract Bundling' system. And, the thesis established strategies to legalize this system and considered the revisions on the laws and items pursuant to fire facility constructions.

Key words : Separate contracting system, Contract bundling, Fire facility constructions

1. 서 론

소방시설공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시설공사로서 그 시설의 안전성과 정확성이 요구되는 특수성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등록된 업자가 반드시 시공하도록 소방법령에서 그 자격 및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대부분의 건설공사는 종합건설업체에서 일괄 수주하는 실정에 있다. 그 결과 소방시설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많은 중소기업체들은 공사수주 기회를 상실하고 하도급 또는 하청업체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으로 소방시설공사업체들은 날로 퇴보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

현행 건설 분야에서의 각종 제도 및 규제는 상당 부분이 부실공사의 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소방시설공사와 같이 하도급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서는 하도급 단계의 근본적 개선이 없는 경우, 부실시공 방지와 기업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의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체 간 저가하도급이나 부당가격 및 불공정거래 등으로 이어지는 분석을 통해 소방시설공사에서의 분리발주제도 도입의 타당성 및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국내 공공공사 분리발주 현황

2.1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현황¹⁾

정보통신공사사업법에서는 1971년 1월 12일 제정 시,

[†]E-mail: Isk@snut.ac.kr

제13조 도급계약의 분리규정에서 “공사는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1971년부터 현재까지 12차례의 법령 개정 시에도 변함없이 이 규정을 유지하여 오고 있다.

아울러 정보통신공사의 전문성 및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이를 분리발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분리발주 예외 규정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건설공사와 동시에 수행되는 공사 중 특별한 사유를 인정하여 규정한 것이다.

2.2 전기공사 분리발주 현황²⁾

전기공사사업법은 1961년 5월 5일 건설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전기배선공사를 건설업법의 규제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전기공사사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기틀이 마련되어 1963년 2월 26일 법률 제1280호로 전기공사사업법이 제정되었다. 그 후 전기공사 시공의 안전성 확보와 전문 업종의 보호 및 육성을 통한 경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1976년 12월 31일, 전기공사사업법의 전면개정을 통하여 제1장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와 제5장 제22조(전기공사의 분리발주)의 항목 등 분리발주에 관련된 규정이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전기공사사업법(법률 제2967호)은 1976년 12월 31일 제2차 개정 시 제22조에서 정보통신공사사업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도입되었다.

3. 선진외국의 공공공사 발주형태

3.1 미국의 공사발주 보호제도³⁾

- 연방정부차원의 중소기업 발주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으며, 2004년 현재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목표 발주 비율은 전체 원도급 금액 중 23% 이상을, 그리고 전체원도급과 하도급을 포함한 금액 중 3~5% 이상을 중소기업에 발주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 연방차원의 중소기업 수주기회 증대 정책수단으로는 Set Aside제도와 입찰우대제도가 대표적인데, Set Aside제도는 발주청이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고자 할 때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고, 입찰우대제도는 연방정부 발주공사에서 중소기업에게 입찰 가격의 10%까지 우대하거나 중소기업 원도급 입찰자에게도 우대점수를 가점으로 주는 제도이다.

- 발주청은 예상 가격이 2,500달러에서 10만 달러 이하인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수행능력이 있고 타당한 가격으로 입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게만 입찰자격을 주고 있으며, 또한 예상가격이 10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도 2개 이상의 수행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에서 입찰이 예상되고, 공정한 가격에 발주될 것이 예상되면 중소기업에게만 입찰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Table 1. Comparison of the Existing Statute of Seperate Contracting System⁴⁾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전기공사사업법
공사의 도급	제29조(공사의 도급) 발주자는 공사를 공사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9> [전문개정 1999.2.5]	
공사의 제한	제3조(공사의 제한)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사업자(이하 “공사사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도급을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생략-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 ① 전기공사는 공사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분리 발주	제25조(도급의 분리)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전기공사의 분리발주)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26]

1) 안철모,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에 대한 소고”,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논문지 제2권, 제2호,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p.67, 2003.

2) 법제처 홈페이지 참조, <http://www.moleg.go.kr>

3) 이수경,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도 법제화 방안연구”, 한국소방공사협회, pp.72~74, 2008. 11.

4) 법제처 홈페이지 참조, <http://www.moleg.go.kr>

3.2 일본의 공사발주 보호제도⁵⁾

- 일본은 관공수법에 분리발주를 권장하고 있으며 건설업법 제4항에 '전기·통신, 환기, 급배수, 냉난방, 승강기 등 건설설비공사는 당해 전문공사업자에 분리발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여 공종별로 분리발주를 하도록 하고 있다.

- 발주자의 의사가 직접 반영되고 시공의 책임과 비용이 명확히 된다는 분리발주의 장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분리발주의 시행을 위하여 발주자의 체제 또한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직접 수령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시공업체(하도급)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다.

3.3 독일의 공공공사 발주제도⁶⁾

독일은 분할발주와 공종별 분리발주를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가능한 공종별로 분할하여 발주하도록 VOB에 규정되어 있다. 실제의 발주에 있어서도 분할발주가 불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종별로 분할발주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은 분할발주의 대상이 되는 공종도 경우에 따라 상이하지만 평균 30~40개의 공종에서 최대 120개 공종을 일일이 분리발주 하고 있다.

독일에서의 발주방식의 선택은 품질확보가 가장 주된 요인이며, 일괄 발주 시에는 원도급자의 관리비용 증가로 경제적 측면에서도 분리발주가 효율적이라는 것이 주된 견해이다.

3.4 영국의 공공공사 발주제도⁷⁾

영국의 경우에는 분리발주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환경성(DoE: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 신규공사의 90%, 왕립평가사협회(RICS: Royal Institution of Chartered Surveyors) 보수공사의 경우 10% 정도는 분리발주를 하고 있으며, 전기 또는 통신설비업자는 주로 하도급업자로서 공사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에서도 분리발주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고 있는데 특히, 영국통신산업협회(TIA: Telecommunication Industry Association)는 통신설비의 중요성과 전문성이 중요시됨에 따라 앞으로 분리발주를 통하

여 원도급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한편 통합발주(설계·시공 일괄방식, 턴키방식)의 예산절감효과에 대하여는 부정적인데, 입찰가격이 전통적인 방식보다 높고, 최고가격 보증을 하더라도 공사 수행 중에 예산이 증액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품질저하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국의 환경교통지방부(DETR: Department of Environment Transport and Regions)는 품질규정을 만들어 일괄발주 시 품질확보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다.

4. 일괄발주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문제점 분석

4.1 소방시설공사의 부실화 초래

대부분의 종합건설업체에서는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법적인 요건만 구비하고 공사를 수주한 후에는 제세공과금, 관리비, 자재비, 이윤 등을 과다하게 공제하고 최저가의 금액으로 소방시설을 전문으로 하는 공사업체에 하도급 또는 부분하청을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문성, 능력, 경륜 등은 도외시하고 무조건 최저가의 공사금액을 제시하는 업체에게 도급을 주는 등으로 도급질서가 문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전문성의 결여와 공사실행 금액의 부족으로 시공업체는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손해를 보게 되므로 자연히 공사는 부실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4.2 소방산업의 퇴보화 초래

소방전문공사업체에서는 하도급 또는 부분하청을 받아 시공을 할 때 법적명칭은 수주한 건설업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시공능력평가에서 저평가되므로 공공공사의 입찰 자격요건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방기술의 향상은 기대할 수 없으며, 국가시책인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소방산업의 퇴보를 가져올 것이다.

4.3 건축비 증가와 하자보수 지연

건축주는 종합건설업체들의 중간마진까지 공사비에 포함시키므로 건축비만 증가하고 양질의 공사를 제공할 수 없으며, 소방시설공사를 종합건설업체에서 직접 시공하지 아니하고 전문 업체에 하도급 또는 부분하청한 관계로 하자발생 시 건축주는 수주한 종합건설업체에 보수를 요구하게 되고 종합건설업체에서는 시공한

5) 권영진,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를 통한 선진소방공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소방정책학회·한국조직학회 공동 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p.164, 2009. 06.

6) 이수경,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도 법제화 방안연구", 한국소방공사협회, p.75, 2008. 11.

7) 이수경,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도 법제화 방안연구", 한국소방공사협회, p.77, 2008. 11.

소방공사업체를 찾아서 보수하도록 지시하게 되는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하자보수가 늦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4.4 기타 문제점

(1) 소방공학의 전문성 도태 우려

소방시설공사사업은 소방공학이라는 별개의 학문적 연원으로 하여 건축, 토목공사와는 독립적으로 설계·시공·운영되고 있는 고유의 업역으로서 일괄발주제도가 유지될 경우 소방시설공사의 학문적 근원인 소방공학이 근본적으로 부인되게 되어, 이로 인한 소방공학의 발전 저해와 건축물에 있어서 소방 설비의 첨단화·다양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의 약화가 우려된다.

(2) 국민의 안전한 경제생활에의 위협의 우려

소방시설공사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공사이기에 시공의 부실에 따른 위해성은 실로 막대하다. 따라서 일괄발주제도의 유지는 현재의 불공정한 가격 형성력과 건설생산시스템의 부적정성을 소방시설의 부분으로 전이시켜 하나의 먹이사슬처럼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체의 경영악화로, 경영악화를 보존하기 위한 공기단축·설계무시·불량자재사용·현장책임자 또는 감리자와의 야합 등으로 이어져 중국에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제도는 최상은 아니더라도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인식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3) 국가 기간산업 측면에서 경쟁력 약화 우려

소방시설을 국민생활과 산업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이고 기술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즉, 소방시설공사 시공분야는 소방공학의 결정체로서 아무리 고급기술을 개발한다 하여도 이를 적용 및 이용하도록 하는 소방 설비 없이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기술적 연구와 제도의 개선 및 정책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괄발주제도의 유지를 주장하는 것은 소방시설공사사업의 중요성과 수행 과정 등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서 소방시설공사사업의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곤란하게 하여 소방 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의 장애 및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5. 소방시설공사사업의 분리발주 타당성 검토

5.1 시공의 품질확보

한 건의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총 공사금액은 크게

직접 공사비와 경비, 그리고 이윤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접 공사비에는 직접 재료비, 직접 및 간접 인건비가 포함되며, 경비에는 각종 보험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구성된다. 직접 공사비와 경비, 그리고 이윤의 산출근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직접공사비

(통상적으로 전체공사금액의 약 73% 정도)

▶ 직접재료비: 전체 공사금액에 대해 통상적으로 약 35%

(실질산출물량 + 손실물량)자재 단가가격의 자료 금액

▶ 직접인건비: 전체 공사금액에 대해 통상적으로 약 35%

실질산출물량 품셈 노무비 단가

▶ 간접인건비: 통상적으로 직접인건비의 약 10% 즉, 전체공사금액의 약 3%

◇ 경비

▶ 산재 및 고용보험 등 각종 보험료 + 안전관리비 : 전체 공사금액에 대해 통상적으로 약 27%

◇ 이윤

: 통상적으로(직접인건비 + 간접인건비)약 1~3%

상기 한 건의 공사 비용구성이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되었을 때, 집행되는 항목별 공사비용의 비율을 정리하면 위 Table 2와 같다.

통상적으로, 구성되는 공사금액이 하도급에 재하도급 되면 전체 공사금액의 50~64%의 예산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종합건설업체에서 전문 공사업체로의 최초 하도급 시, 간접인건비는 전문 공사업체에 거의 적용되지 않아 공사의 관리·감독에 있어서

Table 2. The Construction Cost Ratio when Subcontracting⁸⁾

항 목	통상 비율	하도급 시 비율	실행비율 (실행예산 또는 재하도급)	최근 Worst Case
직접재료비	35%	33%	30%	29%
직접인건비	35%	21%	14~18%	13%
간접인건비	3%	없음	없음	없음
경비	27%	10%	8%	8%
소계	100%	64%	52~56%	50%

8) 아래 자료는 공식 자료는 아니며, 소방기술사 등 현재 공사 실무자들과의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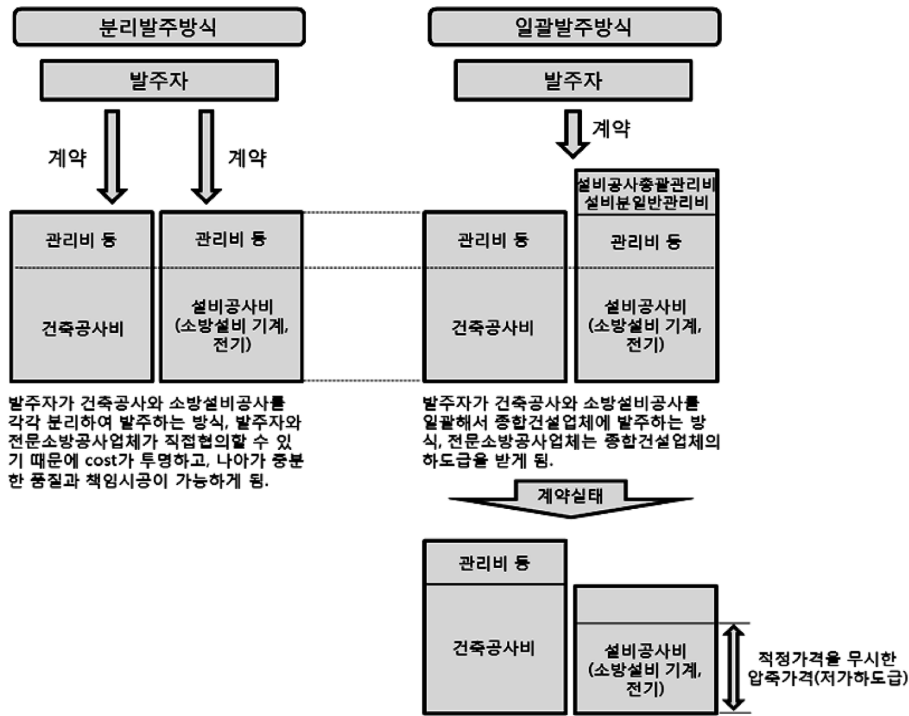


Figure 1. Bundle contracting system & separate contracting system.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실행되는 이면계약에 의해 부당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초 하도급 업체가 재하도급 없이 공사를 직접 실행하게 되는 경우에도 직접재료비, 직접인건비 및 경비에서 본래 계획된 비용보다 적은 비용으로 공사를 실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공사의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심각하다. 요컨대, 위와 같은 관점에서 공사 도급방식의 중층화를 절감하고 시공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써 분리발주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라 하겠다.

5.2 전문성의 향상

공사는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공종별로 수행되는 전문식 완성품이다. 따라서 고도로 전문화되고 시스템화 되지 않는다면 이는 목적물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전문건설업으로 규정된 업종별 업역에 의한 분리발주는 공사의 품질 뿐만 아니라 전문화된 업역에 대한 보장이며, 고품질에 대한 신뢰성 담보 요구에 대한 시대적인 요청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반증하고 있다.

5.3 하도급 관행에서 적정지위 확보

종합건설업체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으로부터 유일한 대안을 찾는 데 어렵지 않은 해결책을 보면 분리발주로부터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다. 건설 하도급 계약에서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갖는가가 건설 하도급 계약에 관한 논의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 우월적 지위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서는 명확한 개념 정의가 없다. 따라서 우월적 지위의 개념을 다양하게 구체화하고 각각의 구체화된 개념에 대해서 건설 하도급 규제의 근거가 되는가와 또한 규제의 타당성이 있다면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제도적으로만 하도급을 보호하기 보다는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시공의 주체가 직접적인 도급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발주방법의 개선책으로서 공종별 분리발주의 당위성이 존재한다. 공종별 분리발주의 당위성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통합화된 공정 관리와 각종 보고의 일원화라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모순점이 있으나, 아직 시행 초기 단계인 건설사업관리(CM)를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도입준비가 활성화 되

면 소방시설공사에서의 분리발주제도의 도입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6.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도 법제화 추진전략

6.1 발주 및 입찰제도의 개선

최근 발주방법의 다양화와 효율성에 대한 관련업계의 요구로 발주 및 입찰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이슈가 되고 있다. 현재 건설선진국에서는 비용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효율성을 중시하는 형태로 나아가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공사의 특성과 금액비중, 공종, 품질 등의 요구조건에 따라 적합한 적용과 탄력적인 선택의 폭을 가진 발주방식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폐쇄적이고 경직적인 생산체계를 시장의 원리에 의한 개방적이고 유연적인 체계로의 전환과 더불어 수요자나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과 현장 상황에 따라 계약방법을 선택·적용할 수 있는 자율성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가 개선·변화됨으로써 발주처의 역량에 의한 분리발주가 도입 및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수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제도를 활용한 공동

도급제도 또는 각 공종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소방시설공사 전문 업체는 해당 분야를 직접 시공함으로써 분리발주방식과 동일한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 하도급 단계에서 나타나는 저가하도급, 이중계약, 장기어음 지급 등 하도급 관련 부조리의 근원적 차단과 수직·중층적 건설생산 체계를 수평·전문적 협력 체계로의 전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6.2 소방전문업체의 직접 시공제도의 도입

현행의 하도급 구조에 의해 시공하는 것은 산업발전 단계로 볼 때 가장 하위단계이다. 이에 따른 직접시공제도의 설치는 결국 분리발주의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시책에 따른 제도의 활용으로 소방시설공사 분야에서도 분리발주 도입의 토대로 삼아야 하며, 이로써 현장에서의 시공관리 능력의 배양과 성숙된 기술력을 함양하는 한편, 전문분야에서 독립적 우위를 갖추어 하도급에 의한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식의 제품생산 탈피와 독자적 위치, 기술력을 바탕으로 공사를 수주, 시공함으로써 위상정립과 저가하도급에 의한 부실공사의 근원적 차단으로 공사의 품질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Table 3. A Fire Facility Constructions Law and An Enforcement Ordinance Improvement

		현행 조문	개정안
공사의 도급 및 도급의 분리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21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함에 있어서 공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한다.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함에 있어서 공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한다. ②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 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동법 시행령 제12조	단서 조항 없음	법 제2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2.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서 기술 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단서조항신설)
공사의 제한		제24조(소방시설업의 공사제한) 동일인이 제2조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 또는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중략) 그 설계업자 공사업자 및 감리업자는 동일한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공사 및 감리를 함께할 수 없다.	현행 유지

6.3 업계 기술력 배양, 인재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

소방시설공사 분야의 경우 타 업종에 비하여 영세화와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것은 물론 소방시설부분의 하도급 단계의 구조로 인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의 근본적 사유는 소방시설공사업계 전반의 기술개발과 투자의 미비로 인한 기술력 저하와 인재육성 등에 대한 의지나 노력이 등한시된 것도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이공계 기피현상에 따라 기초과학 및 소방시설 분야에서의 응용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사고와 창의성을 갖춘 우수인력의 확보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상태이다. 특히 현재 소방시설공사 분야 종사자들의 경우 기능력의 저하와 이직을 또한 높아 종결 후의 하차 보수 단계에서 공사과정의 이력미비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 건설 산업의 경우 일자리 창출 등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산업으로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업계관련자들의 인재육성과 기술력의 배양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로써 소방시설공사 전문 업체의 영세성과 낙후성, 위상정립을 위한 방안에 대한 해결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6.4 공사 주체의 의식변화 및 법제화 추진세력화와 적극적 홍보

각 공종간의 대등한 위치확보와 문제점에 대한 상호간 협력체계가 되어 각 공사 주체의 공사 관리능력이 미흡하거나 분야 간 시공연계성이 안 되는 경우, 문제점을 사전 조율하여 분쟁의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발주처의 경우 오래전부터 통합발주가 관행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내부규정의 개정과 담당자에 의한 공사발주 시의 분리발주 적용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인식의 변화 또한 필요하다. 아울러 소방인의 대동단결을 근간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도의 효용성과 우수성을 공공공사 발주기관 및 민간에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홍보하여 분리발주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리라 본다.

7. 결 론

시공의 품질확보 및 전문성의 향상과 더불어 하도급 관행에서의 적정지위를 확보하는데 근간이 될 수 있는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제도의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도입과 발전을 위한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공공공사에서의 발주 및 입찰제도의 개선 측면

에서 효율성, 공정성, 투명성의 목적이 적절하게 조합되는 발주방식인 입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수요자나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과 현장상황에 따라 계약방법을 유연하게 선택·적용할 수 있는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본다. 또한 도급방식의 중층화를 절감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써 소방전문업체의 직접시공제도의 도입 및 발주처의 관행으로 여겨진 일괄발주에 대한 내부 규정의 개정과 발주 시 분리발주 적용에 대한 공사 주체의 강력한 의지와 인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소방시설공사업계 전반의 기술개발과 투자, 전문공사업체의 대우 개선 등을 통한 우수인력의 확보, 소방시설공사업체의 신규 등록 및 면허 취득 시 기술력 증빙조건의 강화, 전문 업체의 집중 육성으로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하는 등의 방안 또한 필수적이며, 전 소방인의 대동단결을 통한 법제화의 추진 세력화 및 분리발주제도의 효용성과 본래의 취지를 발주기관과 민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리라 본다.

참고문헌

1. 이수경,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도 법제화 방안연구”, 한국소방공사협회, pp.70-73, pp.87-92(2008).
2. 이철구, “설비공사의 분리발주에 관한 연구”, 世明論叢, 제12집, pp.305-308(2005).
3. 김정배, “전기공사 분리발주제도 당위성에 대한 고찰”, 電氣設備, 181, pp.44-45(2000. 9).
4. 권영진,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를 통한 선진소방공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소방정책학회·한국조직학회 공동 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p.164(2009. 6).
5. 안철모,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에 대한 소고”,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논문지, 제2권, 제2호, p.67(2003).
6.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http://www.law.go.kr/LSW/LsTrmSc.do?menuId=0&query=%EC%A0%84%EA%B8%B0%EA%B3%B5%EC%82%AC%EC%97%85%EB%B2%95](http://www.law.go.kr/LSW/LsTrmSc.do?menuId=0&query=%EC%A0%95%EB%B3%B4%ED%86%B5%EC%8B%A0%EA%B3%B5%EC%82%AC%EC%97%85%EB%B2%95#liBgcolor0)
<http://www.law.go.kr/LSW/LsTrmSc.do?menuId=0&query=%EC%A0%84%EA%B8%B0%EA%B3%B5%EC%82%AC%EC%97%85%EB%B2%95#liBgcolor0>